

선거관리규정

제 정: 2023.06.19.(이사회 승인)

최근개정: 2026.03.16.(이사회 승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수석부회장선출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선거 등의 시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학회는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독립적 활동이 보장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임원 중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위원은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되 임원 중 이사회에서 정한다. 간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이 겸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수석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임기) 선관위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수석부회장 후보자가 인준이 된 날까지로 한다.

제4조 (의결) 선관위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및 선거인 명부의 확정은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한다.

제5조 (제척)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순차 분과 및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자격을 득한 분과의 소속 임원”은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6조 (임무) 선관위는 학회 수석부회장선출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회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련된 선거 등의 시행을 위한 임무를 맡는다. 또한, 이 규정 제1조(목적)에도 불구하고, 학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선관위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선거 일정)

- ① 선거 일정은 선관위의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수석부회장선출규정 제4조④항 및 제5조④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과 절차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선관위는 10일(휴일 포함) 이상의 공표 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선거권자에게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투표가 진행될 경우, 투표 일자는 투표일 기준 7일(휴일 포함) 이전에 확정하여 선거권자에게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제8조 (선거 운동)

- ①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며, 선거 운동은 우편, 전자우편 및 전화 등으로 하되, 회원으로서 품위유지와 학회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이메일,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학회 및 선관위에 요구해서는 안된다.
- ③ 선관위는 입후보자에 대한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해 입후보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선거인단에게 공식적으로 배포하되 배포 시기 및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단, 선관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의 자료는 배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투표)

- ① 투표는 현장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투표 시행 시, 투표 참여자 서명부를 비치하여, 투표 참여자의 자필 서명을 득해야 한다.
- ③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1인에 대하여 참관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기타 투표 및 개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0조 (선거인단)

- ① “선거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선거인단”이라 함은 선거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 ②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해 연도 평의원으로 한다. 단, 투표 공고일 기준, 권리회원으로 한정한다.
- ③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고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림의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1조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선거권자 과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표 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재투표를 시행하며, 재투표에 대한 제반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2조 (준용)

- ① 수석부회장선출규정 제4조③항에 따라 “당해 연도 순차 분과 또는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자격을 득한 분과”가 해당 분과의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를 시행할 경우 선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분과의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인단은 직전년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분과 권리회원으로 한다. 단, 소속 분과를 변경한 경우 및 투표공고일을

기준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제13조 (클린 선거)

-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인지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에서 한다.
- ② 필요시 선관위는 입후보자에게 클린 선거 및 부정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서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③ 입후보자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선관위 간사를 통하여 문의 하여야 한다.
- ④ 학회는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선관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부칙 (2023.0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